

생명보험계약 해지와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연구

- 독일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최 병 규*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시사점과 도입방안 |
| II. 보험료면제보험 | V. 맺음말 |
| III. 독일의 논의 | |

주제어: 생명보험의 중요성, 보험계약 해지, 계속보험료 미지급, 보험료면제보험, 보험금의 감액, 최저금액의 도달

<국문초록> 생명보험계약기간은 장기간이 대부분이다.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의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피하고 일정시기까지 생존할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을 보장받거나 실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기가 어렵지만 보험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보험료면제보험의 필요성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실제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납입을 일시 중지하고 납입을 유예하여 주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하여 동 보험계약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료납입면제보험은 약자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입, 위험변경증가, 고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을 끝내기 보다는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위하여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행법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649조). 그런데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워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4.11.26), 심사개시일(2014.12.6), 게재확정일(2014.12.20.).

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그를 도입하기 위한 위치로는 상법 제730조의 2가 바람직하다.

I. 머리말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의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꾀하고 일정시기까지 생존할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을 보장받거나 실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계약기간은 장기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¹⁾를 내기가 어렵지만 보험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보험료면제보험의 필요성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실제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납입을 일시 중지하고 납입을 유예하여 주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하여 동 보험계약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료납입면제보험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러한 보장시스템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논의 가운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바꾸어주는 규정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상세히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II. 보험료면제보험

생명보험은 보장적 기능²⁾ 및 저축적 기능을 수행한다.³⁾ 그런데 보험기간이 장기이어서 보험계약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

1) 보험료 산정은 매우 어렵다. 즉 보험서비스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미리 예측하여 요율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율산정시에는 수리적, 통계적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필요로 한다.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303쪽.

2)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은 최근 보장성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적극 개발한 데 주요 요인이 있는 것이다.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211쪽.

3)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444쪽.

재하게 되고 그 경우 일종의 사회보장적 제도로써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액 보험료면제보험 내지는 감액 납제보험⁴⁾이다. 이는 잔여보험기간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장래에 향하여 일시보험료로 대체하고 보험금액을 감액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1. 실제의 약관

(1) 우체국 보험

우리의 경우 우체국 보험에서도 감액 보험료 면제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납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채신관서는 동법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43조와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환급금")의 범위와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우체국보험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험료납제 보험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생명보험 표준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허용한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사용에서는 이 글에서는 양자를 같이 사용한다. 다만 보험료면제보험이라는 표현이 쉬운 한글 표현이므로 그것을 선호한다.

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표준약관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4항).

2. 보험업법상의 평등취급의 문제

감액 납제보험이 보험업법상의 평등취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감액 납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금지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보험제도의 유상성에 반하고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⁶⁾ 그렇지만 감액 납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평등취급원칙 위반은 아니다. 보험료를 면제하되 기 납입보험료를 일종의 일시납보험료로 취급하면서 보험급부를 줄이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보험료감액청구권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처음에 예정하였던 높은 위험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정한 다음에 보험기간중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47조).⁷⁾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료감

5)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동조 제2항),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동조 제3호)을 금지하고 있다.

6)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308쪽.

7) 반면에 보험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에 보험료 증액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590쪽.

액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갖는다.⁸⁾ 생명보험의 기간은 보통은 장기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특별이익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높게 정한 경우 그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특별위험의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⁹⁾ 그리고 보험료감액은 그 위험이 소멸된 후의 보험료기간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¹⁰⁾

그런데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은 이외는 다르다. 즉 보험료면제보험에서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되 보험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보험료감액청구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독일의 논의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보험에 대해서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5조¹¹⁾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6조¹²⁾에서는 보험자의 해지 시에도 보험료면제보험으로 화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 8)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323쪽.
- 9)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1, 164쪽.
- 10)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272쪽.
- 11) 독일 보험계약법 제165조(보험료면제보험) (1) 보험계약자는 합의된 최저보험금부에 도달한 이상 언제든지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종결 시에 보험료면제보험으로의 보험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된 최저보험금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잉여금부분을 포함하여 보험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16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료면제보험의 급부는 제169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적립금에 기초하여 보험료산정의 계산에 따라 공인된 보험계리기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매 보험년도에 제시하여야 한다. (3) 보험료면제보험의 급부는 예정된 보험기간의 말에 보험료적립금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잉여금참가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2)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보험자의 해지) (1)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에는 제165조를 적용한다. (2) 제38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보험자가 이행하였어야 할 급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에 생긴 변경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자는 제38조 제1항에 의한 지급기간 및 보험의 변경 발생을 텍스트형식으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최소 2개월의 지급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규범 목적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구법 제175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의 변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¹³⁾ 제2항, 제3항에 의한 지급체제의 법적효과를 변경하는 데에 있다. 보험계약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5조에 의한 변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보호는 소멸되어서는 아니되고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서 낮추어진 급부를 통해 존속되어야 한다.¹⁴⁾ 구법 제175조에 비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의 적용범위는 제1항에서 확대되었다. 동 규정이 이제는 보험료지급체제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확대되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¹⁵⁾ 제3항의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하

13)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계속보험료의 납입지체) (1) 계속보험료가 적시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의 비용으로 텍스트형식상 적어도 2주간에 해당하는 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다. 미지급 금액, 이자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제2항과 제3항에 다른 기한경과와 관련한 법률효과를 기입한 경우라면 이 같은 기산을 정한 것은 유효하다, 통합된 보험계약의 경우라면 금액은 각각 독립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2) 보험사고가 기한의 경과 후에 발생하고 그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이자 및 비용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3) 보험계약자가 납입지체를 하고 있는 한 보험자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지에고기간을 준수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그 종료시점에 지체중이면 그 기간경과시점이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지시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해지 후 한 달 안에 또는 기한의 경과 후 한 달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제2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 Motive zu §§ 174, 175 a.F.;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175, Rdn. 1.

15)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고지의무) (1) 보험계약자는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보험자가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진 위험상황을 계약의 체결의사를 보낼 때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의사표시 후에, 그러나 계약의 인수 전에 제1문의 취지에 따른 질문을 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자의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자가 고지되지 않은 상황을 알았거나 또는 다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라면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철회권과 제3항 2문에 따른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른 조건은 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의무위반의 경우에 진행중인 보험료기간부터 소급적으로 계약의 요소가 된다. (5)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텍스트형식으로 통지하여 고지의무위반의 결과를 알려준 경우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권리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보험자가 고지되지 않은 위험상황 또는 고지내용의 부정확성을 알았다면 그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6) 제4항 제2문의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보험료

는 경우¹⁶⁾나 제28조¹⁷⁾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의 책무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제24조¹⁸⁾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위험변경으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계약전환이, 보험자가 계약체결시 계산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해 책임짐으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행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써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파괴된 등기관계에서도 보험자는 동 계약에 대해서, 그의 급부 의무가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축소되기는 하지만, 계속 존속하게 됨을 의미한다.¹⁹⁾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4항은 새로운 내용이다. 이는 경영상의 노력보호에서 근로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한다. 동규정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과 보험자가 해지하기 전에 피보험자로 하여금 지급기간을 최소한 2개월을 부여할 것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를 근거지운다. 이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내서 보험보

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고지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통지가 도달한 후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에서 이상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16) 이에 대해서 입법이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Begr. zu Art 1(§ 165 VVG) RegE Gesetz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BT-Drucks. 16/3945, S. 101.

17) 독일 보험계약법 제28조(계약상의 책무 위반)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상의 책무가 위반된 때에는 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자는 의무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로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상의 책무가 위반되어졌을 때에 보험자가 급부를 할 의무가 없다는 계약을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만 이행면제가 된다. 의무를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의 비율에 따라 보험자의 급부 의무는 공제된다, 중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3) 의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확정 또는 보험자의 급부 의무의 확정이나 범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2항과 달리 급부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가 책무를 악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보험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은 보험사고의 발생 후 하게 되는 정보제공의무 또는 설명책무(Aufklärungsobliegenheit)의 위반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이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효과를 텍스트형식의 통지를 통하여 지시하였을 것으로 한다. (5) 계약상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은 무효이다.

18) 독일 보험계약법 제24조(위험증가에 의한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위험이 증가했음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위험 전에 존재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지권은 소멸된다.

19) OLG Schleswig, VersR 1953, S. 20.

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²⁰⁾

2.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법개정²¹⁾ 이후의 새로운 계약, 즉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이전에 체결된 구계약에 대해서는 동조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독일 보험계약법 시행법 제1조, 제4조).

(2) 사항적 적용범위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모든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계약에 대해 적용된다.²²⁾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165조의 적용범위와 상응한다.²³⁾ 보험료적립금이 존재하지 않고, 이 이유로 보험료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의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사안처럼 보험관계의 해소에 이르게 된다.²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된다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1항의 법적효과는 맞지 않는다. 일시납보험의 보험계약은 (이미 보험료납부 의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5조에 의하여 변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⁵⁾ 그렇지만 등가관계 파괴 이후에 해지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전환되지 않고 존속된다면 보험자에게는 위험에

20) Begr. zu Art. 1(§ 166 VVG) RegE Gesetz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BT-Drucks. 16/3945, S. 101.

21) 독일의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에 대한 상서는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101쪽 아래 참조

22)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 166, Rdn. 2;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 166, Rdn. 2;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166, Rdn. 3.

23) Mönich, in: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165, Rdn. 3.

24)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 165, Rdn. 2.

25) Motive zu §§ 174 a.F. S. 234.

있어서 원래 합의한 보험계약의 부담이 계속하여 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적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로 보험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²⁶⁾

3. 요건

(1) 해지(제1항)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현존하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고 또 보험자에 의한 유효한 해지를 전제로 한다. 이 때 해지는 원칙적으로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지사유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3항 제1문),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3항), 위험증가로 인한 해지(독일 보험계약법 제24조, 제158조 제1항) 또는 계약상 합의된 책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독일 보험계약법 제28조 제1항).

1) 위험증가와 책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계약법 제24조, 제1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험증가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해지권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58조(구법 제16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과거에는 별로 기능할 하지 못하였다.²⁷⁾ 즉 독일 보험계약법 제158조에 의하여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위험증가로서 합의된 위험사정의 변경의 경우에만 위험증가로 인정되었었다. 그러한 합의는 독일 민법 제305조 이하에 의한 내용통제를 통과할 수 있는 한 생명보험약관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²⁸⁾ 그런데 실무상 보통의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다.²⁹⁾ 최근 버전인 생명보험약관 2008(ALB 2008)에서도 위험증가에 대한 그러한 합의

26) Mönich, in: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S. 1546.

27)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158, Rdn. 3.

28) Motive zu §§ 164 a.F. S. 223.

29)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164, Rdn. 4.

내용은 없었다. 그리하여 위험증가로 인한 해지가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가 구법 제175조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개별적으로 위험증가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의 적용범위가 동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의 책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에 의해 확대된다고도 할 수 없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 합의된 책무위반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³⁰⁾ 그러한 책무위반과 그에 의거한 해지는 실무상 생명보험에서는 보통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명보험약관에서는 그 위반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험사고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실무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해지권이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의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제권은 보험계약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3항 제2문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³¹⁾

3) 보험료 지급지체로 인한 해지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로 인한 해지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의 중요한 적용범위로 인정되고 있다. 지급지체로 인한 유효한 해지의 요건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주어지고 또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가) 해제조건부 해지

보험료 지급지체로 인한 해지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3항 제3문에 의하여 해지후 1월동안은 남아있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급부를 하도록 해제조건부로

30) Bruck/Möller, VVG, Bd. I, 9. Aufl., Berlin, 2008, § 28, Rdn. 132.

31)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19, Rdn. 118 ff.

할 수 있다. 그 1월의 기간전에 보험계약자가 납부를 하면 해지는 효력이 없게 되고 그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³²⁾ 이 경우는 변환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이 규정을 변경하지는 아니한다.

나) 제38조 제2항의 법적효과의 수정

보험사고가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설정된 지급기간 경과후이기는 하지만 해지전에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이 시점에 지체중인 때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로부터 면책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2항은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보험자가 급부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면제보험의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변환은 지급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가 해지를 실제로 선언한 경우에 비로소 변환이 이루어진다.³³⁾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범위를 위해서는 변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그로써 아직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아있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보호를 장래를 행해 재건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달려있다. 해지이후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권리를 1개월 동안만 갖는다(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3항 제3문).³⁴⁾

다) 제38조 제1항에 의한 지급기간 설정시의 알려줄 의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3항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1항 제2문의 정보제공의무를 보충한다. 동 제38조 제1항 제2문은 기간경과와 결부되는 남아있는 보험료의 액수, 이자, 비용을 개별적으로 표기하여 알려주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설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한다.³⁵⁾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3항은 이 정보제공의무를 “발생하는” 변환에 대하여 알려줄 것으로 보충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3항의 법문언은, 해지를 통하여 발생하는 변환에

32)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 166, Rdn. 5.

33) Reinhard, VersR 2000, S. 1096.

34)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38, Rdn. 12.

35) BGH, VersR 1999, S. 1525.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이지 제166조 제2항과 결부한 제38조 제2항에 의한 지급기간 경과의 효과로 인한 보험금부 감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³⁶⁾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기간경과 효과로 인한 보험금부감축 뿐만 아니라 해지와 함께 발생하는 변환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³⁷⁾ 이를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3항에서 이끌어 내지 않는 한 그러한 알려줄 의무는 바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문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38조 제1항 제2문에 의하면 제38조 제2항의 법적 효과를 알려주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효과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2항과 결부한 동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험이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되었다면 인정되는 급부의무의 감축에 존재하게 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한 변환 및 동 제2항에 의한 급부의무 감축은 최소한의 보험금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제165조 제1항 제2문과 결부한 제1항 제2문). 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로부터 면책이 되며 보험은 소멸한다. 그 때에는 제169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는 지급기간 경과로 면책되며 계약은 경우에 따라 해지의 효과로 소멸한다는 점을 지시하여 주어야 한다.³⁸⁾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3항과 결부된 제38조 제1항 제2문의 지시는 제38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기간설정이 유효하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올바르게 완전한 교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설정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전 보험금액에 대하여 급부의무를 부담한다.³⁹⁾ 유효한 기간설정 없이 행하여진 해지는 무효이다.⁴⁰⁾

36) Reinhard, VersR 2000, S. 1096.

37) Motive zu §§ 174, 175(a.F.), S. 236.

38) OLG München, VersR 2000, S. 1095.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 166, Rdn. 7.

39) OLG München, VersR 2000, S. 1095.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2003, § 175, Rdn. 5.

40)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2003, § 175, Rdn. 5.

라) 재변환청구 부존재

유효한 해지이후 및 제38조 제3항 제3문에 의한 1월의 기간 경과이후에는 보험계약자는 원래의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재변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⁴¹⁾ 이와는 달리 원래 합의된 보험보호로의 복원청구권은 제212조⁴²⁾의 요건 하에 가능하다. 즉 경영상의 노령보호를 위해 체결된 계약으로서 보험료 미납시 육아휴업기간(Elternzeit) 보험료면제보험으로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업기간 종료후 3개월 내에 변화없는 조건으로의 보험의 계속을 요청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4) 보험자의 정규해지권 부존재

위에서 언급한 해지사유 이외에 보험자에게는 일반, 정규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⁴³⁾ 독일 보험계약법에는 명시적인 해지금지 는 없다.⁴⁴⁾ 하지만 동법 제163조, 제164조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보험료와 조건을 적용할,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해지불가능성의 전제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밖에 보험자의 정규의 해지는 생명보험의 핵심에 반한다. 약관에서 있을 수 있는,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해지권은 독일 민법 제307조⁴⁵⁾에 의해 무효가 될 것이다.⁴⁶⁾ 그러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41) BGHZ 13, S. 234.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166, Rdn. 8.

42) 독일 보험계약법 제212조(육아휴업후의 생명보험의 계속) 육아휴업(Elternzeit)중 기업연금법(Betriebsrentengesetz) 제1a조 제4항에 의한 대가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체결된 생명보험이 육아휴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면제보험(납제보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업기간 종료후 3월 내에 보험을 전환전의 관계로 계속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3) Begr. zu Art. 1(§ 164 VVG) RegE Gesetz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BT-Drucks. 16/3945, S. 100; Wandt, Versicherungsrecht, Rdn. 1219.

44) Hohlfeld, in: FS Lorenz, S. 301.

45) 독일 민법 제307조(내용통제) 1)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2) 어느 조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그 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인 경우에 그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2.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때. 3) 제1항, 제2항 및 제308조, 제309조는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 또는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하는 약관조항에 대

개별적으로 합의한 계약의 종료(Aufhebung)는 계약자유의 원칙(독일 민법 제311조⁴⁷⁾)상 허용된다.

(2) 제165조에 의한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의 전환

해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고 보험자가 자신의 해지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면 보험은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된다. 즉 제19조 제3항, 제158조와 관련한 제24조, 제28조 제1항, 제38조 제3항의 법적 효과는 제166조에 의해 변경된다. 그리하여 보험자의 해지권은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최소보험급부에 이르는 한(제165조 제1항 제1문), 급부가 감축된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서 유지된다.⁴⁸⁾ 이러한 계약변환을 위하여는 제165조가 적용된다. 그이 대한 내용은 독일 보험계약법(VVG) 주석서의 제165조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⁴⁹⁾ 제165조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계약변환은 진행중인 보험기간의 말이 아니라 해지가 유효하게 되는 시점에 행하여진다.⁵⁰⁾ 따라서 제165조 제3항과는 달리 이 시점에 대해 감액 보험료면제보험급부도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39조⁵¹⁾로부터 도출된다.⁵²⁾

하여만 적용된다. 그 외의 조항은 제1항 제1문과 결합한 동항 제2문에 의하여 무효일 수 있다.

46)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166, Rdn. 5.

47) 독일 민법 제311조(법률행위에 기한 채권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채권관계) (1)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또 채권관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요구된다.....

48) BGHZ 13, S. 234.

4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165, Rdn. 22.

50) Motive zu §§ 174, 175 a.F. S. 235.

51) 독일 보험계약법 제39조(기한 도래 전의 보험종료) (1) 보험관계가 보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보험상의 보호가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보험자에게 귀속한다. 보험관계가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제가 되거나 악의에 의한 사기로 인하여 보험자가 취소한 경우 종료한다면 보험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을 시점까지 보험료는 귀속한다. 보험자가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한다면 적절한 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6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종료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서 이 기간에 적용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2)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2003, § 175, Rdn. 2.

(3) 취소/해제의 경우 유추적용 금지

보험자의 해제나 취소는 해지와 동일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그 경우는 제166조를 (유추) 적용해서도 안된다.⁵³⁾

(4) 사용자에게 의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4항은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 외중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동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보호의무를 근거지운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유사한 정보제공의무 및 보호의무를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이것은 근로자로서 하여금 독일 보험계약법 제34조에 의한 보험보호를 견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⁵⁴⁾

1) 적용범위

사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하고 또 근로자가 피보험자이며 동시에 수익자인 경우의 생명보험계약이 해당된다.⁵⁵⁾ 이러한 계약이 경영상 노령보호 직접보험의 전형적인 경우이고 보통 저축연금(Sterbekasse)의 경우에도 보통 이 경우에 해당한다.⁵⁶⁾ 독일 보험감독법 제118b조 제3항, 제4항의 의미에서 규제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의 적용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보험계약법 제211조 제1항⁵⁷⁾ 제2문). 경영상의 노령보호의 다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제4항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53) OLG Schleswig, VersR 1953, S. 20.

54) OLG Düsseldorf, VersR 2003, S. 628.

55) Begr. zu Art. 1(§ 166 VVG) RegE Gesetz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BT-Drucks. 16/3945, S. 101.

56) Pröll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 166, Rdn. 14.

57) 독일 보험계약법 제211조(퇴직연금금고, 소규모 보험사단, 소액보험) (1) 제37조, 제38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및 제169조는 감독관청의 승인하에 보험약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험감독법 제118b조 제3항, 제4항의 의미에서의 퇴직연금금고(Pensionskasse)의 보험, 2. 보험감독법의 의미에서의 소규모 사단이라고 인정된 사단에 의하여 인수된 보험, 3. 소액의 생명보험, 4. 소액의 상해보험

2) 정보제공과 지급기간 연장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 제4항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체결한 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지급기간에 대한 규정 및 발생하는 변환을 텍스트형식(독일 민법 제126b조⁵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보험자는 최소 2개월의 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때 미납보험료 및 그 이자, 비용도 표기하여야 하며 지급지체의 법적 효과도 알려주어야 한다.⁵⁹⁾

(5) 약관대출의 경우

약관대출형 생명보험에서 대출이자를 납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해지사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구조가 보험료납입지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보험료면제보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변경가능성

독일 보험계약법 제166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71조⁶⁰⁾). 동 규정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가입하려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약관에서 변경되는 규정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 안에서만 둘 수 있다.⁶¹⁾

58) 독일 민법 제126b조(텍스트형식) 법률에 의하여 텍스트형식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또는 문서에의 지속적 재생에 적합한 다른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표의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의 종결이 이름의 印寫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9) Begr. zu Art. 1(§ 166 VVG) RegE Gesetz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BT-Drucks. 16/3945, S. 101.

60) 독일 보험계약법 제171조(다른 합의)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53조 내지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 제161조, 제163조 내지 제170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가입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165조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환 요청 및 제168조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해지를 위하여는 서면형식 또는 텍스트형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61) Begr. zu Art. 1(§ 166 VVG) RegE Gesetz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BT-Drucks. 16/3945, S. 116.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IV. 시사점과 도입방안

오늘날 민영보험으로서 생명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개개인들의 노후보장과 자금마련, 생계유지 등을 위해 민영보험으로서 생명보험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계약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감액된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하여 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의 경우에도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문의 위치로는 상법 제730조의 2가 제일 적당하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730조의2(감액 보험료면제보험)</p> <p>① 보험계약자는 합의된 최저보험급부에 도달한 이상 언제든지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종결 시에 보험료면제보험으로의 보험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합의된 최저보험급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잉여금부분을 포함하여 보험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7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된다.</p>

V. 맺음말

유족의 생활보장 내지는 자신의 노후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생명보험이다.⁶²⁾ 또한 생명보험은 저축적 기능을 수행한다.⁶³⁾ 원래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다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보험급부를 변경하거나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미납입, 위험변경증가, 고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을 끝내기 보다는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위하여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행법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그런데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⁶⁴⁾ 따라서 사정이 어려워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은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그를 도입하기 위한 위치로는 상법 제730조의 2가 적합하다고 본다.

62)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334쪽.

63)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7판, 삼영사, 2013, 305쪽.

64) 송옥렬, 「상법강의」, 제3판, 홍문사, 2013, 328쪽.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상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송옥렬, 「상법강의」, 제3판, 홍문사, 2013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이기수 · 최병규 · 김인현,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이필규 · 최병규 · 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1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최준선, 「보험 · 해상 · 항공운송법」, 제7판, 삼영사, 2013

[외국문헌]

- Beckmann/Matusche-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2004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 ~ 2002
Bruck/Möller, VVG, Bd. III, 9. Aufl., Berlin, 2010
Halm/Engelbrecht/Krahe, Handbuch des Fachanwalts Versicherungsrecht, 3. Aufl., 2008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München, 2010

-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München, 2004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2003
Rüffer/Halbach/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aden-Baden, 2009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Wandt, Versicherungsrecht, 5. Aufl., 2010

<Abstract>

A Study on Cancellation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and Premium Exempted Insurance - Focused on Analysis of German Legal System -

Choi, Byeong Gyu

Nowadays the life insurance has importance function for the welfare of the citizens.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s limitation. The civil life insurance make up for the weak poi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nation should promote the civil based life insurance.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 falls in financial difficulty, he is going to cancel the life insurance contract. But the cancellation causes big financial loss.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go on forth. But the insured sum should be reduced. It is unevitable, because the contractor can not pay the insurance premiu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recognized the premium exempted insurance : Under the condition of reduction of insured amount,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transform his life insurance into premium exempted insurance. Furthermore, when the insurer cancels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t is automatically transformed into premium exempted insurance under the certain conditions. We should adopt such a system. Because premium exempted insurance has social security function, it is helpful for the social safety network. It should be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proper position would be § 730-2 KHGB. Then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HGB can have the better contents. The many nations in the world are trying to get better legal syste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Japan, china, germany have reformed recently the insurance contract law for this purpose. When we get premium exempted insurance regulations, our insurance contract law will get much more competitive contents.

Key Words : importance of life insurance,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
non-payment of premium, premium exempted insurance,
reduction of insured amount, coming to certain sum